

[별표 2의3] <개정 2008.8.20>

축산물의 포장방법 등(제7조의9관련)

1. "포장"이라 함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매단위 포장(1~5마리 단위의 포장을 권장), 부위별 포장(20kg 이하 단위의 포장을 권장) 또는 벌크 포장(25마리 이하 단위의 포장을 권장)한 것으로서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(이하 "합격표시"라 한다)를 한 것을 말한다.
2.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·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.
3.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「식품위생법」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